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6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별 타당성을 재검토·조정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일부 자구수정 및 관련법 조문 삽입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 나. 감면 비율 등을 일부 축소 조정함 (안 제6조, 제20조2, 제24조의2).
- 다. 인용 법령 및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함(안 제12조, 제13조).
- 라.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5).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3. 11. 12. ~ 2003. 11. 22.(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 : 행정자치부

안산시시세감면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별 타당성을 재검토·조정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일부 자구수정 및 관련법 조문 삽입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 나. 감면 비율 등을 일부 축소 조정함 (안 제6조, 제20조2, 제24조의2).
- 다. 인용 법령 및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함(안 제12조, 제13조).
- 라.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5).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3. 11. 12. ~ 2003. 11. 22.(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 : 행정자치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주민공동체”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에 관한 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 또는 감면하여 납부(기간)중에 있거나 부과기준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인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 영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김 항 용
	담당자 성명·전화	양 태 호 (행정 218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해당되는 경우에는-----</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자 동차 폐차영업소-----</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당되는 경우에는-----</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자동차 폐차영업소-----</p> <p>-----</p> <p>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주민공동체 ----- ----- ----- 면제한다.</p>
<p>제20조의2(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의2(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 ----- ----- -----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p>제2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3년간 -----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5(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u> <u>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u> <u>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u> <u>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u> <u>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u> <u>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u> <u>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u>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u> <u>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u> <u>감한다. 다만, 기존공장을 승계취득 하였</u> <u>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u> <u>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